

인천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783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4.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소3319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해 2017. 9. 4.부터 2018. 9. 4.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C는 2018. 6. 14. 08: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렀다. 당시 위 C는 도로 편도 5차선 중 버스전용차로 표시가 점선으로 그려진 5차선을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빠른 속도로 멈추지 않고 직진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작은 도로를 빠져 나와 큰 도로를 가로질러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원고 차량운전자는 그 차량의 앞면 부위로 피고 차량의 우측 옆면 뒷문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위 교통사고 당시,

- 1)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직진방향의 교통신호는 없었다.
- 2)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빠져나와 원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 5차선을 완전히 건너 원고 차량 진행방향 차선에 들어와 원고 차량이 운행하던 그 진행방향 5차선을 거의 통과하여 우측 소로로 진입하려던 때에, 원고 차량이 직진하다 피고 차량의 우측 옆면 뒤 문짝 부위를 충격한 것이다.
- 3) 원고 차량의 진행 차선 좌측 옆 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 4)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소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내지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직진하였고, 당시 도로에 차량들로 정체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제동을 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한 F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 3. 22. 피고에게 536,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5차선의 대로를 가로질러 교통신호기가 없는 소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있는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차량 정체가 심하여 원고 차량 좌측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소로를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좌측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대기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과 같이 위 대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만연히 자신의 신호가 직진신호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은 이미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쪽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다 지나서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5차선까지 통과하여 우측 소로로 곧 진입할 상태였는데도, 원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버스전용차선으로 직진하여 위 피고 차량의 옆면 우측 뒤 문짝 부위를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 C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은 20%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기두, 판사 소병진, 판사 원용일